

계급환산기준표(제34조제2항 관련)

구분 계급	국가·지방 일반직 또는 별정 직공무원	기능직 고용원	군 인	교 육 공 무 원			정부관리 업체	관 련 직 무 분 야 학 위 소 지자
				초등학교 · 중학교 · 고등학교 교원	전문대학 교원	대 학 교 원		
경 정	5급		소 령	18~23 호봉	13~18 호봉	11~16 호봉	과 장 차 장	박 사 학 위 소지 자
경 감	6급 (3년 이상)	기능직 5등급	대 위	14~17 호봉	11~12 호봉	9~10 호봉	계장, 대 리(3년 이 상)	
경 위	6급	기능직 6등급	중 위(항 공요원은 준위)	11~13 호봉	9~10 호봉	7~8 호봉	계장, 대 리	
경 사	7급	기능직 7등급	준 위 (중사)	9~10 호봉	8호봉 이 하	6호봉 이 하	평사원(3 년 이상)	
경 장	8급	기능직 8등급	중 사 (특경인 의무경찰)	4~8 호봉			평 사 원	
순 경	9급	기능직 10등급	하 사, 병	3호봉 이 하			평 사 원	

비고

1.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「경찰공무원임용령」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.
2.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,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.
3.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 교육공무원란 중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교원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,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별표 12에 따른 호봉을 말한다.